

기관명

수 신

(경유)

제 목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 송부

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 제23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를 아래와 같이 송부합니다.

제 호		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대상자 추천서		
특별채용 의무자	기관명			
	기관장명		전화번호	
	소재지			
취업지원 대상자	보훈번호		5·18민주 유공자와의 관계	
	성명		생년월일(성별)	()
	주소		전화번호	
	학력		자격·면허	
	전공		직렬	
붙임: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」 별지 제13호서식의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통보서 1부.				
※ 유의사항: 위 취업지원 대상자를 채용한 경우에는 「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1조제3항 및 제31조에 따라 취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붙임의 일반직공무원 및 일반군무원 특별채용 통보서를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송부해야 합니다.				

끝.

발 신 명 의

직인

기안자 직위(직급) 서명 검토자 직위(직급) 서명 결재권자 직위(직급) 서명
협조자

시행 처리과-일련번호(시행) 접수 처리과명-일련번호(접수)

우 주소 / 홈페이지 주소

전화번호 () 팩스번호 () / 기안자의 전자우편주소 / 공개구분